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10.27.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 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약사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 전결 2023. 10. 6. 장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4870 (2023. 10. 6.) 접수 의료자원과-7362 (2023. 10. 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737 /전송 044-202-3934 / shsong98@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